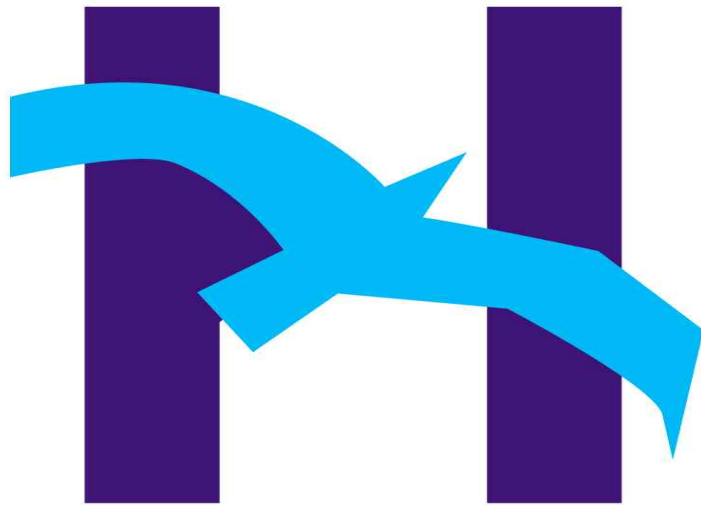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



해운대고등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2016학년도 해운대고등학교 입학전형요강

1. 모집인원

남학생 240명(8학급)을 선발한다.

모 집 부 문			모집인원
정원 내	일반전형(체육특기자 포함)		192명
	사회통합 전형	기회균등 전형	48명
		사회다양성 전형	
정원 외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4명(정원의 2% 이내)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7명(정원의 3% 이내)

- 지원자는 한 가지 전형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사회통합 전형 대상자의 선발 비율은 전체 모집정원의 20%이며,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를 50% 이상 우선 선발함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 우선선발에서 미충원이 발생할 시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음
- 기회균등 전형 대상자의 우선선발에서 탈락한 지원자의 경우에는 사회다양성 전형 대상자에 포함시켜 전형함
- 사회다양성 전형은 소득 8분위 이하에 준하는 가정의 자녀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음(단, 소득 8분위는 교육부가 제공하는 기준을 따름)
-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제2항 제4호」에 의거 입학 정원의 3%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함(단, ‘사회통합 전형’과 ‘정원 외’ 전형 중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여 지원하여야 함)

2.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가. 공통지원자격

- 1) 부산광역시 소재(자율형사립고가 없는 시, 도 - 경남, 제주, 충북, 세종시 포함) 중학교 졸업자와 2016년 2월 졸업 예정자
- 2)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로서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단, 중졸학력검정고시 합격자는 부산교육청 비교평가에 응시하여야 함)
-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종사자의 자녀인 자(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28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부산 이전 (예정) 기관 - 13개 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한주택보증,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남부발전(주),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예정)

나. 전형 구분별 지원 자격 및 제출서류

1) 일반전형 :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제 출 서 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2부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원정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단면 출력,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3)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4) 교사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6)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각 1부 7) 비교평가 응시자 :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가 지원할 경우 - 보호자(공공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	

2) 사회통합전형 : 「가」항의 자격을 갖춘 자 중 다음 세부 지원 자격을 갖춘 자

가) 기회균등전형

구 분	세 부 지 원 자 격
국가보훈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그 자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교육 급여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상위복지급여 수혜자 또는 그 자녀 차상위복지급여를 받고 있지 않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차상위계층 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그 자녀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p><표1>참고</p>
한부모가정 자녀 (수급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복지급여 수급권자 자녀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일정액 이하로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학생 <p><표1>참고</p>
학교장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의무자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가계파산 또는 재산 압류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가 질병·사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거나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로 폐업·휴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자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제 출 서 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공통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2부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단면 출력,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3)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4) 교사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6)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각 1부 7) 비교평가 응시자 :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재학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1부* 9) 주민등록등본(모든 가족 등재) 1부 10)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 부·모·지원자·형제자매 확인 가능해야 함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가 지원할 경우 - 보호자(공공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
국가보훈대상자	•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20%)	• 시·군·구청장 발행 차상위계층 확인서 또는 차상위 의료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1부 ※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서류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6개월분 이상 납입기록이 있는 것) 각 1부
한부모 가정자녀 (수급권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차차상위계층 (최저생계비 150%)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건강보험료납입증명서 1부(서류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6개월분 이상 납입기록이 있는 것)
학교장 추천	• 실적급여수급증 사본, 채권압류통지서, 법원 파산 결정문 사본, 폐업확인서, 지역 건강보험료 영수증(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포함), 급여명세서 중 해당 증빙서류 1부 • 담임의견서 1부 • 학교장 추천위원회(재학중학교) 의견서 1부

※ 사회통합전형(기회균등전형 대상자)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표1> 최저생계비에 따른 건강보험료 적용 기준 -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평균 납입액 적용

○ 차상위 계층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

※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781,168.5	24,280	3,571	24,944
2인	1,330,098.0	40,515	18,324	41,017
3인	1,720,682.0	52,333	32,803	52,957
4인	2,111,266.5	64,080	52,026	64,956
5인	2,501,851.0	75,980	72,579	76,843
6인	2,892,435.0	88,430	88,962	89,521
7인	3,283,019.5	99,769	105,472	100,852
8인	3,673,604.0	112,221	122,708	113,621
9인	4,064,188.5	124,384	137,773	126,158
10인	4,454,773.0	135,442	149,772	137,248

○ 차차상위 계층 -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가구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

※ 단위 : (원)

※ 4인 가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150%는 기준 중위소득 약 59.2%에 해당(2015년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926,000	28,462	6,730	29,371
2인	1,577,000	48,368	26,859	48,560
3인	2,040,000	62,201	48,941	62,970
4인	2,502,000	75,980	72,579	76,843
5인	2,965,000	90,671	91,873	91,062
6인	3,428,000	104,450	112,143	105,783
7인	3,891,000	118,139	130,183	119,751
8인	4,354,000	133,489	147,619	135,442
9인	4,817,000	147,705	162,840	149,834
10인	5,280,000	161,683	177,862	164,396

* 출처 :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 참고 사항

- (1) 기회균등전형 한부모가족 : 지자체에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는 자에 한함
- (2) 사회다양성 전형 한부모가족 : “모자가족” 또는 “부가가족”의 모 또는 부가 양육하는 아동 가족
- (3) 기회균등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 심사 결과에 따라 교육비가 지원됨

나) 사회다양성전형

※ 아래의 세부 지원자격을 갖춘 자 중 소득8분위 이하인 가구의 자녀만 지원 가능 <표2>, <표3> 참고

구분	세부 지원 자격
다문화가정자녀	• 지원자의 부모 중 1명이 외국 국적자이거나 귀화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북한이탈청소년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 또는 그 자녀
소년·소녀가장	• 기초생활수급자 외 소년·소녀가장
조손 가정 자녀	• 조손 가정 자녀
장애인 자녀	• 1~3급 해당 장애인 자녀
순직 군경·	• 순직 공무원(군인,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자녀 또는 의사자 자녀

구분	세부지원자격
소방관 등 자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 다자녀(출가하지 않은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를 말함)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 복지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한부모 가정 자녀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자녀	• 복지시설 운영자 또는 복지시설 종사자 자녀
경찰·군인·소방공무원 자녀	• 경찰은 경사 이하 자녀 • 군인은 준사관 / 부사관 이하 자녀 • 소방공무원은 소방장 이하 자녀
환경미화원 자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 소속 별정직 공무원 신분의 환경미화원으로 재직 중인 자의 자녀
해외파병군인 자녀	• 최근 10년 이내 해외파병 경력이 있는 군인의 자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 국가 또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자녀
우편집배원 자녀	• 우편집배원의 자녀
선원 자녀	• 선원(승선 업무 수행자에 한함) 자녀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공통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2부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단면 출력,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3)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4) 교사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6)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각 1부 7) 비교평가 응시자 :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1부 8) 주민등록등본(모든 가족 등재) 1부 9)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1부 - 부·모·지원자·형제자매 확인 가능해야 함 10)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재학 학교장 및 학부모) 확인서 1부* 11) 소득 8분위 이하 증빙서류 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나. 건강보험납입증명서 1부 - 서류 제출일로부터 2주 이내에 발급받은 6개월분 이상 납입 기록이 있는 것 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및 '혼합' <표2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세 납입금 기준 <표3 참고>을 충족하는 재산세 납입증명서(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1부 추가 제출

제 출 서 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가 지원할 경우 - 보호자(공공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
다문화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1부 • 외국인등록증명서 1부 • 귀화증명서(해당자) 1부
북한이탈청소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자치단체장 또는 통일부장관 발행) 1부
소년·소녀가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1부
조손 가정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또는 제적등본 1부
장애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등급판정서(해당자) 1부
순직 군경·소방관 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직확인서 또는 의사사증서 1부
다자녀 가정의 세 번째 이상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자녀 개인별 본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한부모 가정 자녀(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제출 서류만 제출
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시설 운영자인 경우, 사회복지시설 신고증(해당자) 1부 • 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1부
경찰·군인·소방 공무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1부
환경미화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1부
해외파병군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병기록이 기재된 병적증명서 1부
무형문화재 보유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인증서 사본 1부
우편집배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직증명서 1부
선원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선(승무)경력증명서 1부

※ 특정직업 종사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직종에 재직 중인 자에 한한다.

※ 사회통합전형(사회다양성전형 대상자) 서류 제출 시 참고사항

<표2> 소득 분위별 건강보험료 기준표(※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적용 제외)

※ 단위 : (원)

- 서류 제출일로부터 6개월간 평균 납입액 적용

- '직장 가입자' 및 '혼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3>참고)을 충족해야함.

구분	연 소득 환산액	월 소득 평균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혼합
8분위	71,543,571	5,961,964	182,127	199,987	185,538

* 출처 : 통계청 사회통계국 복지통계과(통계청--물가·가계-가계-가계소득지출-가계동향조사(신분류))
 * 통계표명 : 가구당 월평균 분위 경제값 및 적자가구 비율(2인 이상)

<표3> 소득 분위별 재산세 납입금 기준표

※ 단위 : (원)

※ 재산세 납입 기준은 전년도 기준을 적용하며, 교육부에서 수정 제시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소득구분	월 추정 소득	재산 추정 금액	재산세 납입금 (연간)
8분위	5,775,915	577,591,500	756,220

3) 체육특기자 전형 : 본교 체육특기자 별도의 선발 규정에 의함

4) 정원 외 전형 :

구분	세부 지원 자격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3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4일 이내 발급한 것이어야 함

제출서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공통	1)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1부* 2)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2부 - 수상경력(4번) 제외 - 교과학습발달상황(7번)은 원점수, 과목평균(표준편차)을 제외하고 성취도(수강자수)만 출력 - 교과학습발달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중 영재기록사항 제외 - 단면 출력, 원본대조필, 학교장 직인 날인 및 간인 3) 자기소개서(본교 소정양식) 1부* 4) 교사추천서(본교 소정양식) 1부* 5)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6) 검정고시 합격자 : 합격증 사본 및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지참) 각 1부 7) 비교평가 응시자 : 비교평가 성적표 사본(원본대조필) 1부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자녀’ 가 지원할 경우 - 보호자(공공기관 종사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재직증명서 1부도 함께 제출해야 함
특례입학 대상자 전형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 모, 학생) 각 1부 (체류 기간 및 거주 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능함) • 외국 학교 성적 증명서 1부 - 반드시 정규학교임을 확인하는 재외공관 경유 증명 또는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을 것 - 영문 및 한글 외 언어로 발급받은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을 받을 것 • 국내 최종 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1부 • 전 가족 주민등록등본 1부

제 출 서 류 (* 온라인 원서접수 사이트에 입력 후 출력)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 공통 제출서류만 제출

3. 전형일정 및 장소

구분	인터넷 원서 접수 기간	원서 및 서류 제출일	면접 대상자 발표	면접 전형일	합격자 발표
기간	2015.11.23.(월) ~11.25.(수) 13:00	2015.11.23.(월) ~11.25.(수) 17:00	2015.11.27.(금) 14:00	2015.12.01.(화) 09:00~17:00	2015.12.04.(금) 12:00
장소	원서접수사이트	본교 접수처	◆ 본교 홈페이지 ◆ 해당학교 공문발송	본교 면접장	◆ 본교 홈페이지 ◆ 해당학교 공문발송
참고	[원서접수사이트] →[입력] →[출력] →[중학교 확인] →[본교제출]	◆ 09:00 ~ 17:00 ◆ 대리인 가능 ◆ 등기우편 (마감 전 도착)		◆ 신분증 ◆ 수험표 ◆ 필기도구	합격자 예비소집 2015.12.12.(토)
					합격자 입학등록 2016.01.04.(월)~ 01.07(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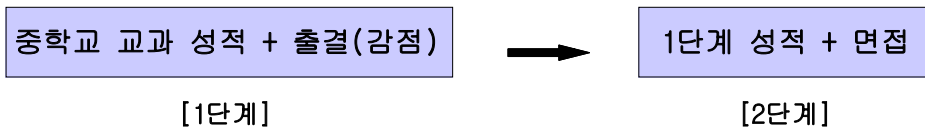
※ 정원 미달 시 추가 및 보충모집

- 지원 당시 전·후기고의 어떤 고등학교에도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만 지원 가능

구분	원서 교부 및 접수	전형 기간	합격자 발표	입학 등록
추가모집	2016. 1. 11.(월) ~ 1. 13.(수)	2016. 1. 14.(목)	2016. 1. 15.(금)	2016. 1. 18.(월) ~ 1. 20.(수)
보충모집	- 2016. 2. 15.(월) ~ 5. 31.(화) 본교 자체 계획에 의거 보충 모집 실시. - 이에 대한 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을 공고하고 시행함.			

※ 체육특기자 전형은 별도로 실시함

4. 전형방법 : 자기주도학습전형(체육특기자전형·특례입학대상자전형 제외)



가. 1단계 : '중학교 교과 성적(140) + 출결(감점)' (정원의 1.5배수 선발)

1) 교과 성적(140점) 산출 방법

교과 성적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의 성취도를 반영하되, 3학년 2학기 30%, 3학년 1학기 25%, 2학년 2학기 20%, 2학년 1학기 15%, 1학년 2학기 10%의 비율을 적용한다.

※ 자유학기제 실시 학교는 성적이 산출된 모든 학기의 성적을 반영하되, 최근 학기부터 30%, 25%, 20%, 15%, 10%의 순으로 비율을 적용한다.

[산출 공식] : $\sum(\text{성취도 환산 점수} \times \text{학기별 적용비율} \times \text{교과별 적용비율} \times 3.5)$

가) 교과 성적은 소수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나) 교과 성적 산출점수는 아래 표 참고

성취도	A	B	C	D	E
환산 점수	40	32	24	16	8
학기별 적용비율 (만점)	교과별 만점점수 (140점)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24 %	28 %	28 %	10%	10%
1학년 2학기 10 % (14점)	3.36	3.92	3.92	1.40	1.40
2학년 1학기 15 % (21점)	5.04	5.88	5.88	2.10	2.10
2학년 2학기 20 % (28점)	6.72	7.84	7.84	2.80	2.80
3학년 1학기 25 % (35점)	8.40	9.80	9.80	3.50	3.50
3학년 2학기 30 % (42점)	10.08	11.76	11.76	4.20	4.20

※ '자유학기제의 경우'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학기는 그 이전 학기의 성적을 순차적으로 반영한다.

※ 집중이수제 등으로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대체 기준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나 학년	대체 학기	교과 성적이 없는 학기나 학년	대체 학기
1학기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동일학년의 2학기 성적 반영	2학기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동일학년의 1학기 교과성적 반영
1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성적 반영 1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성적 반영	2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2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성적 반영 2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3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성적 반영 3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성적 반영	1,2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2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성적 반영 1,2학년 2학기 : 3학년 2학기 성적 반영
1,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1,3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성적 반영 1,3학년 2학기 : 2학년 2학기 성적 반영	2,3학년 교과성적이 없는 경우	2,3학년 1학기 : 1학년 1학기 성적 반영 2,3학년 2학기 : 1학년 2학기 성적 반영

'사회' 성적이 없는 학기의 경우에는 '역사' 성적을 반영하며, 사회와 역사를 함께 이수한 학기의 경우에는 '사회' 성적만 반영합니다. 사회와 역사 중 어떠한 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대체 기준'에 따릅니다.

※ 위의 방법으로 성적산출이 곤란한 자는 학교생활기록부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비교평가 성적증명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 졸업자 중 성취도 수준이 없고, 평어 '수, 우, 미, 양, 가' 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경우, 이를 각각 'A, B, C, D, E' 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 부산광역시교육청 비교평가 응시자의 교과성적은 비교평가 성적을 반영하되, 교과목별 만점의 90% 이상은 A, 80% 이상 90% 미만은 B, 70% 이상 80% 미만은 C, 60% 이상 70% 미만은 D, 60% 미만은 E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2) 출결 상황 산출 방법

출결 = - [무단결석 일수의 환산점수]

가) 중학교 재학기간 중 무단으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 횡수를 합산하여 결석일수를 산출하되, 질병 또는 기타로 인한 결석,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일수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나) 무단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그 횡수를 합산하여 3회를 무단결석 1일로 계산한다.(2회 이하는 버림)

다) 결석일수에 따른 출석 성적은 다음 표와 같다.

무단결석 일수	1~2일	3~4일	5~6일	7~8일	9일 이상
성적 감점	1점	2점	3점	4점	5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유학의 특례) 변경에 의거하여 부양의무자와 불가피하게 동거할 목적으로 동반 출국한 경우 이를 유학의 특례로 인정하여 '무단결석'으로 처리된 학생생활기록부의 내용을 정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되, '부 또는 모 중 1인과의 정당한 출국'관련 증빙서류(출입국증명원, 파견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기타결석'으로 처리하여 감점하지 않음

< 1단계 최저 합격선 동점자 처리 기준 >

- 1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3학년 2학기** 상위자
- 2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3학년 1학기** 상위자
- 3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2학년 2학기** 상위자
- 4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2학년 1학기** 상위자
- 5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1학년 2학기** 상위자
- 6순위 - 교과성적 산출식에 의한 교과성적(국어 / 수학 / 영어 / 사회 / 과학) **1학년 1학기** 상위자
- 7순위 - 출결점수에서 감점이 없는 자

* 본 기준 적용 후 1단계 최저 합격선 동점자는 모두 2단계 응시자격을 부여함

나. 2단계 :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으로 선발

1) 면접점수 산출 방식

$$\text{면접} = \text{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 + \text{인성 영역}$$

2) 면접 영역별 평가 내용 및 배점

평가요소	평가 내용	배점	관련 서류
자기주도 학습영역	1) 자기주도 학습과정(학습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행한 목표 설정 · 계획 · 학습 · 결과 평가까지의 전 과정)과 그 과정에서 배우고 느낀 점 2) 건학이념과 연계해 본교 진학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 3) 본인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한 활동계획과 졸업 후 진로계획	45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
인성영역	1) 본인의 핵심인성요소(배려, 나눔, 협력, 타인 존중, 규칙준수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 경험 2) 인성영역 활동(중학교 활동)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	15	

※ 교과 지식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입학전형(구술면접, 적성검사, 영어듣기 평가, 외국어 면접 · 토론 등)은 일절 실시하지 않음

※ 면접 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입학전형영향평가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함

(해당 홈페이지 사이트는 추후 공지)

※ **교사추천서, 자기소개서 작성 유의 사항**

1. 자기소개서는 자기주도학습 영역(꿈과 끼 영역)과 인성 영역을 평가가 가능하도록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 (대리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에는 사후에도 입학 취소 등 불이익 부과)
2. 본문에 자신의 경험이나 사례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영어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교·내외 각종 대회 입상 실적, 자격증(우회적·간접적 기재 포함) 등 기재 시 감정 또는 영점 처리
3. 인증시험 및 경시대회 입상 증빙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우회적·간접적인 진술에도 '0점' 처리

【자기소개서 작성시 배제 사항】

- TOEFL · TOEIC · TEPS · TESL · TOSEL · PELT, HSK, JLPT 등 각종 어학인증시험 점수, 한국어(국어) · 한자 등 능력시험 점수
- 교내 · 외 각종 경시대회 입상 실적, 영재교육원 교육 및 수료 여부 등
- 부모(친·인척 포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암시하는 내용
예) 부모(친·인척 포함)의 구체적인 직장명이나 직위, 소득수준, 고비용 취미 활동(골프, 승마 등), 학교에서 주관하지 않은 모듬 및 프로젝트 활동(사설 학원 및 기관에서 추진하는 교과 관련 활동) 등

5. 사정 방법

가. 일반전형 및 사회통합 전형(정원내)

- 1) 교과성적(출결 포함) 점수,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2) 동점자는 면접 점수, 교과 성적 총점, 3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생년월일이 낮은 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 3) 정원미달 시 1단계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나. 특례입학대상자전형(정원외)

- 1) 모집정원의 2%(4명)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 외로 서류점수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2) 서류점수는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를 근거로 하여 자기주도학습능력과 인성요소를 종합적으로 정성 평가한다.
- 3) 동점자는 면접점수, 서류점수, 생년월일이 낮은 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 4) 정원미달 시 1단계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다.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정원외)

- 1) 모집정원의 3%(7명) 범위 내에서 모집정원 외로 교과성적(출결 포함) 점수, 면접 점수를 합산한 총점 순으로 선발한다.
- 2) 동점자는 면접 점수, 교과 성적 총점, 3학년 2학기 성적, 3학년 1학기 성적, 2학년 2학기 성적, 2학년 1학기 성적, 1학년 2학기 성적, 생년월일이 낮은 자 순으로 사정 선발한다.
- 3) 정원미달 시 1단계 성적으로만 선발한다.

※ **전형단계별 평가 요소 및 배점**

전형 구분	1 단계 (140점)	2 단계 (200점)
일반전형	교과 성적 + 출결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일반전형(체육특기자 전형)	경기실적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사회통합전형	교과 성적 + 출결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특례입학대상자 전형	서류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국가유공자 자녀 전형	교과 성적 + 출결	1단계 성적(140점) + 면접(60점)

6. 합격자 배제 조건

- 가. 제출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증명서 위조, 불법, 편법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하였음이 확인된 자(합격 발표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을 취소함)
- 나. 수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본교의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하기 어렵다고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판단한 자

7. 전형료는 10,000원 (1단계:2,500원, 2단계:7,500원)

- 1단계 불합격자는 사정 이후 2단계 전형료 환불

8. 기타 사항

- 가. 본교에 지원하여 합격한 자는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6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모집에 응시할 수 없다.
- 나. 타 전기고(타지역 자사고, 과학고, 국제고, 외교 등)에 지원하거나 합격한 경우에는 본교 지원이 불가하며, 이중지원은 출신중학교장의 책임하에 철저히 금지된다. 만약 본교 합격 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지면 합격이 취소된다.
- 다. 입학원서와 각종 제출서류는 반드시 정해진 기일 내에 본교 접수처에 제출(우편접수는 당일 도착 분까지 가능)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 라. 면접일(2015년 12월 1일)은 수험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한다.
- 마. 성적처리에 따른 특이한 사항 및 본교 입학전형요강 이외의 사항은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바. 온라인 원서접수 수수료는 전형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 입학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 1) 인터넷 접수 후 출력하여 담임교사가 성적·출결일수를 확인하고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 2) 출결은 중학교 1~3학년까지이며, 무단으로 결석·결과·조퇴·지각한 내용만 기재한다.
- 3) 중학교 학업성취도란은 과목별 성취평가 수준(A~E)으로 작성한다.
- 4) 자유학기제 등으로 성적이 없는 경우는 대체학기의 성적을 해당 학기란에 입력한다.
- 5) 사진은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의 칼라사진 파일을 인터넷 접수 시 활용한다.
- 6) 학력란과 모든 사진에 학교장의 직인을 반드시 날인하여야 한다.

- 7) 검정고시 출신자는 직인란의 직인을 부산광역시 교육청 비교평가 성적표로 대체한다.
- 8) 전형료와 수수료는 인터넷 접수 시 납부한다.

9. 2016학년도 해운대고등학교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

가. 모집종목 및 모집인원

구분	모집종목	모집인원
일반전형	골프	남학생 〇명

나. 지원자격

- 1)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규모의 대회 및 시·도 규모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한 자
- 2)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경기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전국규모 대회 및 시·도 규모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한 자
- 3) 시·도체육회 또는 동 가맹 경기단체와 공동 주최·주관하는 기타 단체 시·도 및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한 자
- 4)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도교육감이 주최·주관하는 전국 및 시·도 규모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에서 개인 또는 단체 3위 이상 입상한 자
- 5) 대한체육회 및 동 가맹단체에서 인정하는 국가대표, 청소년대표, 상비군 및 우수 선수

다. 전형 일정

구분	원서 및 서류 제출일	면접 대상자 발표	면접 전형일	합격자 발표
기간	2015.9.7.(월) ~ 9.9.(수) 17:00	2015.9.11.(금) 14:00	2015.9.14.(월) 11:00	2015.9.16.(수) 12:00
장소	본교 교무실	◆ 개별 통보(유선) ◆ 해당학교 공문발송	본교 면접장	◆ 개별 통보(유선) ◆ 해당학교 공문발송

라. 요소별 반영비율 및 배점

종목	경기실적	면접	합계
골프	140점	60점	200점

▶ 경기실적 반영방법

- 전국규모 및 광역시·도 대회에서 학년별 입상한 상위 2개 대회성적만 반영하되 동점일 경우 가장 최근에 상위 입상한 자를 우선순위로 선발한다.

학 년	전국대회 부여점수			지방대회 부여점수		
	1위	2위	3위	1위	2위	3위
3학년	35.00	30.33	23.33	23.33	18.67	11.67
2학년	23.33	21.00	18.67	18.67	11.67	5.83
1학년	11.67	9.33	7.00	7.00	4.67	2.33

▶ 면접성적 반영방법

- 1) 면접위원은 면접전형 1일 전에 학교장이 임명하며 위원 수 5인 이내로 한다.
- 2) 평가방법
 - 일반소양(50%)
가치관, 대인관계, 학교생활 적응력, 논리성, 창의성, 표현능력, 진취성, 정서적 안정감 등
 - 운동소양(50%)
지원동기의 확실성, 운동계획의 구체성, 진로와의 연계성, 운동관련 기초사항에 대한 일반적 이해력 등
- 3) 면접위원은 본교의 “면접평가표”에 의거 각각 평가한 후 최상위점수 및 최하위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 후 평균점을 반영한다.

마. 제출서류

- 1)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체육특기자 지원서(소정서식) 1부.
- 2)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Ⅱ) 사본 1부.
- 3) 경기실적증명서 1부.

바. 그 외 기타 사항은 일반 전형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문의처 : 612 - 81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3로 11번길 43 해운대고등학교
 (TEL) 교무실 (051) 742 - 0313 / 행정실 (051) 742 - 0312
 (FAX) 교무실 (051) 731 - 9838 / 행정실 (051) 742 - 0321
 (홈페이지 주소) <http://www.haeundae.hs.kr>

해 운 대 고 등 학 교 장

